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처분 결과 공표 의무화 〉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775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 현 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처분결과 공표 의무화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훈기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4. 30.
3. 회 부 일 : 2026. 5.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가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을 부과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표명령은 보호위원회의 재량에 불과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분 결과 및 재발방지 조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실정임.

이로 인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인지하더라도 이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떠한 제재를 받았는지, 어떠한 개선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접 처분 결과 및 조치사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표의 내용 및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알 권리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6조).

Ⅲ. 검토의견: 처분결과 공표 의무화

☐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분 등을 받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해당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66조(결과의 공표) ① (생략)	제66조(결과의 공표)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 ----- ----- ----- ----- ----- -----.
<u><단서 신설></u>	<u>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는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u>
	<u>1.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u>
	<u>2. 정보주체의 권리나 이익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u>
	<u>3. 반복적 또는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현행	개정안
<u><신설></u>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공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처분기관 및 처분 일자 2. 처분 종류 및 내용 3. 위반행위의 내용 및 원인 4.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u><신설></u>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공표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 현행법 제66조¹⁾는 이 법에 따른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또는 징계의 권고,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과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접 공표하거나,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1)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결과의 공표) ①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②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사실 등의 공표 및 공표명령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14.>

그러나, 현행법상 공표 및 공표명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재량을 갖는 권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기업 등에게 이후 어떠한 제재조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정보주체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반복적 또는 중대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분 관련 사항에 대한 공표명령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임.

특히 개정안은 보호위원회의 직접 공표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이를 공표하도록 하는 명령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가 관련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서비스 등의 이용자가 관련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일정 요건에 해당될 때 처분 사실 등에 대한 공표명령을 의무화할 경우, 경각심 제고 및 재발 방지, 정보주체의 알 권리 보장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공표 명령을 의무화하고 있는 주요 입법례를 보면²⁾, 의약품이나 식품

2) 「식품위생법」

제73조(위해식품등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2022.6.10.>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또는 제9조의3 등을 위반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2. 제45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등의 위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표 명령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처분 사실 등의 공표는 한번 이루어지면 공표 대상이 된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회적 평판이나 신뢰 저하 등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후 불복 과정에서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처분 사실 공표와 관련한 입법례³⁾ 중에는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음.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약사법」

제72조(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약품등의 회수 계획을 보고받으면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등의 수입자에게 회수계획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완치 불가능한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일시적 또는 의학적으로 완치 가능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2012.2.1.,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1조제2항에 따라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 경우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약품 제조업자·의약품등의 수입자·판매업자,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제71조제5항에 따른 위해성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1. 방송, 일간신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대중매체
2. 의학·약학 전문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매체
3. 자사(自社) 홈페이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매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13.3.23.>

3)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인적사항,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의 정보, 법령 위반사실 등(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28., 2025. 10. 1.>

○ 둘째,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표명령 의무 대상을 정하는 기준을 보면, (1)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2) 정보주체의 권리나 이익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반복적 또는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인데, 개정안에서도 그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전면적인 의무화는 아니라는 점, 개정안의 내용이 현재 보호위원회에서 구체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표 및 공표명령의 기준과 유사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현행 법체계 하에서 공표 및 공표명령 제도의 운영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개정안의 취지를 실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 시행령⁴⁾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공표 및 공표명령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에서는 보호위원회의 공표 요건으로

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1조(결과의 공표)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위반행위를 한 자
3.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의 부과, 고발, 징계권고, 과태료 부과の内容 및 결과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의 부과, 고발, 징계권고 및 과태료 부과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내용·횟수, 매체와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명해야 하며, 처분등을 받은 자와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위반행위를 한 자
3. 처분등을 받았다는 사실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표하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공표할 것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공표 또는 공표명령에 대한 심의·의결 전에 처분등을 받은 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최근 3년간 시정조치 명령 등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표명령의 요건으로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1천 명 이상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한 행위로 인하여 관련 처분을 받은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위반행위가 3개 이상인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제3조(공표요건)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보호위원회가 정한 고발 기준에 해당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를 고발하는 경우
2. 보호위원회의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내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호위원회의 처분 등을 받은 자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위원회는 위반행위의 고의성, 개인정보 침해의 정도 및 피해규모, 사업규모 등 법 준수의 기대가능성, 과거 법 위반 이력, 추가피해의 방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 위반행위의 결과제거를 위한 노력, 향후 동종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위반행위자의 조사협력 및 자진시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공표명령 요건)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거부하거나 증거인멸, 은폐, 조작, 허위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관련 정보주체 등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요청한 경우
2. 1천 명 이상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한 행위로 인하여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의 부과, 고발, 징계권고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3. 위반행위가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영 [별표 1의5]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제7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5. 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3개 이상 한 경우

6.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한 경우

7.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3년을 초과하여 지속된 경우

8.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9. 위반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10.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매매한 경우

11. 보호위원회의 처분 등을 받은 자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영 제30조의2에 따른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인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위원회는 위반행위의 고의성, 개인정보 침해의 정도 및 피해규모, 사업규모 등 법 준수의 기대가능성, 과거 법 위반 이력, 추가피해의 방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 위반행위의 결과제거를 위한 노력, 향후 동종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위반행위자의 조사협력 및 자진시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표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인터넷 등 공표) ① 보호위원회는 위반행위를 한 자의 법 위반행위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공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인터넷 매체 또는 위반행위를 한 자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공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일간 다시 보지 않기’ 기능의 사용 등 팝업창 설정방식 등에 대해서는 해당 웹사이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위반행위를 한 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②·③ (생략)

참고로 2025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에 33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604억 7850만원, 113개 사업자에게 과태료 5억 9,000만원을 부과하였고, 79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개선권고를 하

였으며, 75개 사업자의 법 위반 사실 공표·공표명령을 하였음.

- 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유출 대응 책임성 강화를 위해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표는 사회적 평가 및 신용을 저하시키는 제재처분으로, 특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공표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행위이며,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처분 사실 공표를 강제할 경우 기업의 평판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04